의안번호	제 6	39 호	
의 결	2014년	월	일
연 월 일	(제	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			
제출연월일	2014년 3월 31일			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639

제출연월일: 2014. 3. 3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(추가) 및 통합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에 따른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 - 1) 지방공무원 총수: 3,137명 → 3,145명, +8명
- 나.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의 대상 범위의 명확화(안 제3조)
- 다.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별표3)
 - 1)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단위기관별 조정: 교육지원청△1, 직속기관+1

3. 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부서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
 - 1) 신・구조문대비표: 별첨
 - 2) 입법예고(2014. 3. 7. ~ 2014. 3. 27.): 특기할 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"3,137명"을 "3,14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2,899 명"을 "2,907명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지방공무원"을 "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작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45			-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2,901			-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2,864		-	-	
전문경력관 소계	13			-	
연구직 계	12		•	-	
연구사 소계	12		-	-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	-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20	11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	-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	제2조(정원의 총수)
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3,137명</u>	3,145명
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	2
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899명</u> (제3	:: <u>2,</u> 907명
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)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<u>지방공무원</u> 의 종류	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특정직공무원을
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제외한 지방공무원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[별표 3]	[별표 3]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지방공무원.	의 정원관	난리 단위	기관별.	직급별 건	성원표(제	4조 관련)
지그벼	기관별	총계	도의회	본청	교육지원청	공립 가그하고	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 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37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<u>2,893</u>			_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<u>2,856</u>	-			
전문경력관 계	13			-	
연구직 계	12			-	
연구사 소계	12			-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	-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<u>19</u>	<u>12</u>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	-	

	÷ .0					
	직급별	총계	사무처	(직속기관 포함)	(소속기관 포함)	각급학교
	기관별	-> -1)	도의회	본청	교육지원청	공립
)	지방공무원의 정원	관리 단위	기관별.	직급별 경	성원표(제	4조 관련
	[= 0]					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 정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정 (소속기관 포함)	
총계	3,145			-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<u>2,901</u>			-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<u>2,864</u>			-	
전문경력관 계	13			-	
연구직 계	12			-	
연구사 소계	12		•	-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	-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<u>20</u>	<u>11</u>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-	

관계법령

-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- 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.
 -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 - 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-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- 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 -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 -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 -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 - 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 반영
- 관련: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1291(2014.3.7.)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일반 지방공무원 8명 인건비

3. 관련조문

○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0조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-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-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- ② ~ ④ 생략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 적용

나. 추계 결과 (단위: 천원)

연간 인건비 추계	연도별 인건비 추계					
산출기초	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				합계	
1. 정규직인건비						
가. 일반지방공무원 57,121,000원× 8명=	456,968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
※ 2015년 이후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3%를 적용하였으며 2014년은 6개월분만 추계 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행정과장 김왕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계
À.	에 입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보	-통교부금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À.	출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정-	규직인건비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7	재원 조달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	소 계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의존	국고보조금					0
재원	보통교부금	228,484	470,677	484,797	499,341	1,683,299
	특별교부금					0
자체	소 계					0
수입	자체수입					0
	지방채					0
	기 금					0
기타(차	입금, 민자, 예비비 등					0